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중고에어컨을 냉난방 겸용으로 알고 구입했습니다. 에어컨 수리를 위해 원 제조업체에 A/S를 신청했더니 기사분이 보고는 원래 냉방만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고가전의 개조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냉방용에어컨을 냉난방 겸용에어컨으로 개조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업자 등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용기와 포장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리 또는 개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조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개조한 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안전인증을 진행 준비중인 앰프내장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제품에 110/220V 전압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PCB에 직접 납땜은 되어 있지 않고 전선을 납땜하여 PCB와 연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압선택 스위치도 안전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A 문의하신 앰프내장형스피커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전압절환용 스위치를 검토하여 본바, 동제품은 스위치 단자를 직접 납땜하여서만 사용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단자를 삽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구조 이므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만 하는 제품임을 알려 드립니다.